

군포도시공사 제10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0년 11월 4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59호

군포도시공사 계약직직원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계약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규정상의 “일반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일괄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문계약직은 정원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구체적인 근무 방법은 계약에 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강사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계약직의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채용계획서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의2의 “강사계약직”을 “계약직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계약직 직원”을 “전문계약직”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삭제하고 “65%”를 “65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상 봉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를 삭제하고 “최초 계약되는 계약직 직원”을 “최초 계약되는 전문계약직”으로 “봉급액”을 “기본급”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부서”를 “인사담당부서”로 “사전심사를”을 “심의/의결을”로 한다.

제12조제4항의 “계약직”을 “전문계약직”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표(제12조 관련)

등 급	기 본 급	
	하 한 액	상 한 액
가	공사 3급 10호봉	공사 3급 20호봉
나	공사 4급 8호봉	공사 4급 18호봉
다	공사 5급 6호봉	공사 5급 16호봉
라	공사 6급 4호봉	공사 6급 14호봉

※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임.

※ 채용 후 직위는 등급별 해당 직급을 고려하여 부여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경 영 전 략 팀 장 박 인 희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태 권 (390-7615)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일반계약직” 이라 함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 특수경력을 요하는 사무 및 기술 분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전문계약직”-----</p> <p>-----</p> <p>-----</p> <p>-----</p> <p>-----</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계약직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일반계약직과 강사계약직으로 구분한다.</p> <p>② 일반계약직 직원은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으로 구분하고, 강사계약직은 시간강사와 배분강사로 구분한다.</p> <p>③ 전임계약직은 정원 내에서 채용하며 비전임계약직(월, 일, 시간제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구체적인 근무방법은 계약에 의한다.</p>	<p>제4조(계약직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전문계약직 -----.</p> <p>② 전문계약직 -----</p> <p>-----</p> <p>-----</p> <p>③ 전문계약직은 정원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구체적인 근무방법은 계약에 의한다.</p>
<p>제5조(채용자격기준 등) ①일반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채용자격기준 등) ①전문계약직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채용계약서) ①일반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강사계약직 직원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6조(채용계약서) ①전문계약직 -----</p> <p>-----</p> <p>-----</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7조(채용승인신청 등) ①<u>계약직</u>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신설> 2. <신설> ② <생략> 1. 채용계획서</p>	<p>제7조(채용승인신청 등) ①<u>강사계약직</u>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계약직의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채용계획서 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p>
<p>제9조의2(후순위자 임용) <u>강사계약직</u>이 중도 퇴사 시 면접점수 후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9조의2(후순위자 임용) <u>계약직 직원</u>-----</p>
<p>제11조(근무실적평가) ①<u>계약직</u> 직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및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연장·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u>성과목표 달성도가 65%</u>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을 할 수 없다.</p>	<p>제11조(근무실적평가) ①<u>전문계약직</u>-----</p> <p>② <현행과 같음> ③ ----- <u>65점</u> -----</p>
<p>제12조(보수결정) ①<u>계약직</u> 직원의 봉급액은 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상 봉급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의 봉급액은 “별표”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과 강사계약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한다.</p>	<p>제12조(보수결정) ①<u>최초 채용되는 전문계약직</u> 직원의 봉급액은 “별표”의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p>

현 행	개 정 안
<p>②최초 채용되는 <u>계약직</u> 직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 <u>근무부서</u>의 장은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u>사전심사</u>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u>전문계약직</u>----- ----- ----- ----- ----- ----- <u>인사담당부서</u>----- ----- ----- <u>심의/의결을</u>-----</p>
<p>③재직중인 <u>계약직</u>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직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의 범위 안에서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p>	<p>③-----<u>전문계약직</u>----- ----- ----- ----- ----- ----- ----- ----- ----- ----- ----- ----- ----- ----- ----- -----</p>
<p>④<u>계약직</u> 직원에 대하여는 군포도시공사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u>전문계약직</u>----- ----- ----- -----</p>

현 행

[별표]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표(제12조 관련)

등 급	기 본 급	
	하 한 액	상 한 액
가	공사 5급 5호봉	공사 5급 8호봉
나	공사 6급 5호봉	공사 6급 8호봉
다	공사 7급 5호봉	공사 7급 8호봉
라	공사 7급 1호봉	공사 7급 4호봉

※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임.

개정안

[별표]

계약직 직원 보수지급 한계액표(제12조 관련)

등 급	기 본 급	
	하 한 액	상 한 액
가	공사 3급 10호봉	공사 3급 20호봉
나	공사 4급 8호봉	공사 4급 18호봉
다	공사 5급 6호봉	공사 5급 16호봉
라	공사 6급 4호봉	공사 6급 14호봉

※ 기본급은 보수규정상 기본급임.

※ 채용 후 직위는 등급별 해당 직급을 고려하여 부여